##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9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이만희·정점식·임이자

안병길 · 송석준 · 김태흠

윤두현 · 이양수 · 권성동

조명희 · 박대수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, 가축,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,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.

이에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###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폭염(暴炎)"을 "폭염(暴炎), 황사(黃砂), 미세먼지(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)"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농업재해"란 가뭄, 홍수, 호	2
우(豪雨), 해일, 태풍, 강풍,	
이상저온(異常低溫), 우박, 서	
리, 조수(潮水), 대설(大雪),	
한파(寒波), <u>폭염(暴炎)</u> , 대통	<u>폭염(暴炎),</u> 황사(黃
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(病害	砂), 미세먼지(「미세먼지 저
蟲), 일조량(日照量) 부족, 유	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해야생동물(「야생생물 보호	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)
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	
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	
다), 그 밖에 제5조제1항에	
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	
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	
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	
설, 농경지, 농작물, 가축, 임	
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	
해를 말한다.	
3. ~ 13. (생 략)	3. ~ 13. (현행과 같음)